CFC기금 융자 효율성은 몇점?

정밀화학공업진흥회,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2차 융자지원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2002년 하반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한 것으로 CFC (프레온가스), Halon(소화약제), 메틸클로로포름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사용하는 기업이 대체를 위한 개발·시설설치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향후 생산·사용이 금지되는 시점에 야기될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케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범위는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또는 시설 설비비로 5-8년 동안 5.0-5.5%의 고정연리를 적용한다.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융자지원내용

구 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지원대상	○오존층 파괴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의 이용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오존층 파괴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의 이용시설 및 대체 제조시설 설치 ○오존층 파괴물질의 회수 및 재이용, 사용량 절감, 파괴시설 설치 ○기타 이용효율 사용합리화 시설 설치
지원범위	연구기자재 구입 및 설치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또는 개수공사비, 설계감리비 (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로 기술도입비 중 경상기술료는 제외
융자금리	연리 5.0%(고정)	연리 5.5%(고정)
융자한도 및 비율	동일사업자에 대해 과제당 10억원 이내로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90% 이내	동일사업에 대해 연간 20억원 이내로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90% 이내
융자기간	5년이내 (2년거치기간 포함)	8년이내 (3년거치기간 포함)

오존층파괴물질은 지구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6년부터 생산·소비가 금지됐고, 개발도상국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면 금지토록 돼 있다.

규제대상 오존층파괴물질의 종류 및 주요용도

종 류	용 도
CFC(염화불화탄소)	각종 냉동, 냉장, 에어컨등 공기조화기기의 냉매, 각종 단열재, 포장재, 쿠숀재의 발포제, 각종 정밀기기부품(금속, 비금속), 광학부품, 전자부품등의 세정제, 드라이크리닝용제, 스프레이제품의 불연성 분사추진제 등
Halon(할론)	박물관, 미술관, 전산 system실, 항공기, 선박등 중요시설의 화재진압용 소화기 및 소화설비의 소화약재 등
CCl_4(사염화탄소)	CFC 제조용 원료, 각종 화학물질의 추출용매, 발염제, 살충제, 변압기의 절연유, 포스겐원료 등
1.1.1-TCE(메틸클로로포름)	금속세정제, 드라이크리닝용제, 섬유발염제, 에어로졸(분사제) 등
CH_3Br(메틸브로마이드)	밀폐된 곡물저장소, 곡물운송선박, 검역소등에서 각종 곤충제거를 위한 소독제 등

한국은 1992년부터 생산·수입허가를 통한 총량규제로 매년 일정량 삭감하는 조치를 취해 2005년에 이르면 CFC 50%, Halon 50%, 사염화탄소 85%, 메틸크로로포름 30%, 메틸브로마이드 50%로 제한한다. 또 2010년부

터는 생산·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도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수출용 제품은 완제품·부품을 막론하고 생산·소비가 금지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2002년 하반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융자지원 신청은 11월30일까지이며, 융자지원 대상자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신청 규모를 감안해 선정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3>